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대표발의: 채우진 의원)

의안 번호	19-132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 .

발의자 : 조역덕, 이홍민, 강명숙, 김기석,
김성희, 김종선, 신종갑, 이민석,
김영미, 채우진

1. 제안이유

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,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나.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(안 제5조)
- 다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(안 제6조)
- 라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업무 등(안 제7조)
- 마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준수사항(안 제8조)
- 바.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9. 9. 11. ~ 9. 16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2.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·시행
3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3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

하여야 하며, 구청장과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) ① 구청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,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·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운영·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·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·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7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업무 등) ① 제6조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2.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 처리
3.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4.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
5.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

함 운영·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준수사항) ①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② 운영·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운영·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.

④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.

⑤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운영·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.

⑦ 운영·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,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

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운영·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) 구청장은 운영·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,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
(약칭: 자원재활용법)

[시행 2018. 11. 29.] [법률 제15101호, 2017. 11. 28., 일부개정]

- 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**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(안)」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(1) 발생요인 :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비용

(2) 관련조문 :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34의제8호 제3항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구청장 지시사항“의류수거함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”(19.1.16)

나. 의류수거함 단가는 업체 별 비교 견적을 기준으로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마포구 의류수거함(400개) 설치에 따른 비용 : 총 135,300천원

(단위 : 원)

품목명	규격	단위	수량	단가	금액	비고
계	500*700*1600		400	307,500	123,000,000 (부가세별도)	
E.G.I.(아연도 강판)-갈바	4*3*1.2T	판	2	37,000	74,000	
V컷팅 및 절곡 가공		식	1	55,700	55,700	
밴딩 가공 및 레이저가공	500*700*250	EA	1	21,700	21,700	
일반구조용각형강판	20*20*1.2T	본	1	11,500	11,500	
본체용접가공및샌딩가공	500*700*1600	EA	1	18,500	18,500	
분체도장2회(하도+상도)	2400*1600*1 ^o	식	1	32,600	32,600	지정색1도기준
로고및이미지 삽입	외부용 시트	Set	1	14,000	14,000	비조명용
보관용 잠금열쇠	일반보급형	EA	1	2,000	2,000	
바닥고정 화스너(아연도3T)	H:80~100	Set	1	16,000	16,000	앵커볼트포함
기존철거 및 설치비		EA	1	61,500	61,500	

4. 재원조달 방안 : 마포구재활용기금

5. 덧붙이는 의견 : 비용추계의 세부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김경훈 (☎9212)